

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◆ 2025년 1일 시설급여

(단위:원)

구 분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요양급여	노인요양시설	90,450원	83,910원	79,240원

◆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(30일 기준)

- ① 무료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 ② 경감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(본인부담금 8%)

(단위:원)

구 분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총 계	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92%)	2,496,420	2,315,916	2,187,024
개인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8%)	217,080	201,384	190,176
	식사재료비(간식포함)	345,000	345,000	345,000
	소계(급여비용+식대)	562,080	546,384	535,176

- ③ 경감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(본인부담금 12%)

(단위:원)

구 분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총 계	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88%)	2,387,880	2,215,224	2,091,936
개인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12%)	325,620	302,076	285,264
	식사재료비(간식포함)	345,000	345,000	345,000
	소계(급여비용+식대)	670,620	647,076	630,264

④ 일반대상 : 본인부담금 20%

(단위:원)

구 분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총 계	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88%)	2,170,800	2,013,840	1,901,760
개인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12%)	542,700	503,460	475,440
	식사재료비(간식포함)	345,000	345,000	345,000
	소계(급여비용+식대)	887,700	848,460	820,440

◆ 비급여 비용 부담액

(단위:원)

비급여 종류	1일당	30일 기준	비고
식사재료비	3,500원*3식=10,500원	10,500원*30일=315,000원	
간식비	500원*2회=1,000원	1,000원*30일=30,000원	
상급침실 이용료	8,000원	8,000원*30일=240,000원	1인실
상급침실 이용료	5,000원	5,000원*30일=150,000원	2인실

- ① 상급 침실 이용료 추가 부담 : 기관 필요에 의해 상급 침실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 등의 이유로 이용 시에는 상급 침실 이용료가 발생한다.

◆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

-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

- 위 경우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
-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(또는 보호자)께 안내한다.
-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, 군,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)-입소,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-서류 확인-공단예 입력-서비스 이용
- ⑤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- ⑥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